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 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 및 종합심사”를 “1차 심사(발표 심사), 2차 심사(현장 심사) 및 3차 심사(종합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서식”을 “제3호의1서식”으로, “사유를”을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로 하며,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명 또는 소재지”를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등)으로 기재사항이”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영문 인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를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이하 “신기술 적용제품”이라 한다)이나 신기술 적용제품”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3항을 제9조제6항으로 이동하며,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 제품에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1호부터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제1호 가목 중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를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기술코드”로 하고, 같은 목 중 “예) 해양수산신기술-2017-0001”을 “예) 해양수산신기술-2017-0001-01”로 하며,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중 “마”를 “바”로 한다.

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번호: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제품코드

예) 해양수산신기술-2017-0001-02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제3호의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기술 이의신청 답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답변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답변대상 기술명				
답변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자료 목록)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인증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답변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답변인(대표자) 제출서류	이의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답변서 작성
답변인

➔

접 수
해양수산부

➔

이의조정심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해양수산부

별지 제5호서식의 “기 관 명: ”을 “기 관 명: (복수의 기관이 공동신청 시 기관명은 병기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영문 인증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구분		한글명		영문명	비고
기재 내용	기술명				
	기술보유자				
	기술개요				
	신기술범위				
신청 사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인증명칭	기술명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주 생산품	
확인대상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청기술 기술명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신청제품명			
	신청모델명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신기술 적용여부	(적용제품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신기술이 적용제품의 생산성, 효율, 품질 및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 신기술과 적용제품의 차이점 등)			
구조, 품질 및 성능 우위	(기존제품 대비 신기술 적용제품의 설계, 구조, 품질 및 성능 우위 정도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용도, 기능, 특징, 사양 등)			
안전성	(적용제품 제조 및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품질경영 체계	(적용현장의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 수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수수료 없음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기타 신기술 적용제품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해양수산부	➔	확인심사 전문분과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

제 호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제 품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술명:

인 증 번 호:

확 인 번 호: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영문 확인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소

구분		한글명	영문명	비고
기재 내용	제품명 (모델명)			
	제품보유자			
	제품개요			
	신기술범위			
신청 사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기술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Certificate Number:)



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Product:

Company:

President:

Address:

Technology:

(Technology) Certificate number:

(Product) Certificate number:

Valid until: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upport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Oceans and Fisheries.

yyyy. mm. dd.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보존용지 120g/㎡]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 품 명 칭	적용제품명(모델명)			
신 청 인	기관(업체)명		대 표 자 명(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 청 사 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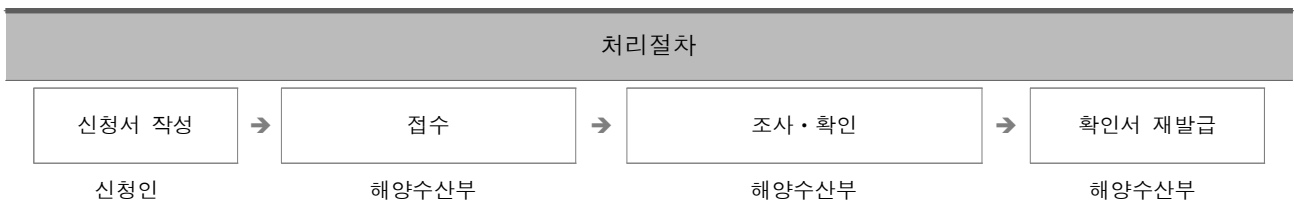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확인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번호는 별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u>서류·면접심사, 현장 확인 및 종합심사</u> 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u>사유</u> 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⑥·⑦ (생략)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차 심사(발표 심사), 2차 심사(현장 심사) 및 3차 심사(종합 심사)----- -----. ④ ----- -----제3호의1서식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 -----. ⑤·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영문 인증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현행	개정안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7호서식의</u>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u>성명 또는 소재지</u>가 변경된 경우 ④ (생략)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생략)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u>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u> 등에만 사용할 수	<u>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③ ----- ----- ----- ---- <u>별지 제8호서식</u>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법인전환) 등으로 기재사항의</u>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이하 "신기술 적용제품"이라 한다)이나 신기술</u>

현행	개정안
있다. ③ <u>진홍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적용제품</u>----- -. ③ <u>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 제품에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1호부터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u> ⑤ <u>제2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현행	개정안
부칙	⑥ <u>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부칙 <u>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및 「해양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해양수산물신기술의 인증번호는 별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u>

〈 소 관 부 서 명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0-6222